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2. 3. 22 선고 2021나31658 판결 [공사대금 청구]

재판경과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2. 3. 22 선고 2021나31658 판결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동해시법원 2021. 5. 25 선고 2020가소10204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A

피고, 항소인B

변론종결 2022. 3. 8.

판결 선고 2022. 3. 22.

제1심판결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동해시법원 2021. 5. 25. 선고 2020가소10204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7,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급명령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4,000,000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19. 11. 4. 피고와 사이에 C 소유의 주택에 매트 화이트 상하, 붙박이장 매트 화이트 슬라이딩, 현관장을 설치하되, 계약금액을 8,000,000원으로 하는 내용의 주문제작판매 및 시공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인정된다.

원고가 공사를 완료한 사실에 대해서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지급받았음을 자인하는 계약금 1,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잔금 7,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부분에 적을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판사박재형

판사조영인

판사임세영